-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2449호

2020. 05. 12.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04. 27. 양천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 05. 01. 행정재경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 05. 12.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등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환경경제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을 두도록 함.(안 제3조)

○ 감사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함.(안 제4조)

○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출산보육과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환경경제국에는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안전교통국에는 안전재난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설치와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동석)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도 시·군·구의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방행정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기구 개편에는 조직의 업무량과 기능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봄.

- 같은 규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고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고려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능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제6조에서는 국은 업무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과는 6급 4명이상이 포함되도록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연구

-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양천구에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양천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민선 7기의 시작과 더불어 양천구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환경의 다양화와 행정수요의 질적·양적 증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조직개편안으로 현행 1의회, 5국, 1담당관, 1기획실, 32과, 1소, 18동 196팀→1의회, 6국, 1담당관, 36과, 1소, 1지소, 18동 204팀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제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천구에서는 1개 국을 신설하고 1개 기획실을 폐지, 4과 신설, 1개 보건지소 신설, 동에 두는 팀을 8개 증가시키고 국의 명칭 변경과 각 국에 두는 과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하여 제출함.

○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대해 규칙으로 두도록 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 안 제3조에서 구에 두는 국으로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환경경제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으로 정한 바, 이는 현행 5국→6국으로 1개국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2017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의 자치구에 두는 국의 수가 당초 최대 5개 → 6개 이하로 확대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수요 증가와 급변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확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또한, 국의 명칭을 행정안전국→행정지원국, 환경도시국→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한 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과별 유사기능을 재분류하여 환경경제국을 신설하고 팀의 기능 재조정을 바탕으로 과 단위 부서의 재배치 및 기능의 조정을 통해 국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표 1】 개편안에 따른 국 명칭변경

국	신 설(1)	○ 환경경제국
	명칭변경(3)	○ 행정안전국 → 행정지원국 ○ 환경도시국 → 도시관리국 ○ 건설교통국 → 안전교통국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기구를 살펴본 결과, 17개 자치구에서 6개 국(정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안 제4조에서는 국에 속하지 않은 보조·보좌기관을 정한 바,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보좌기구로 두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서는 보좌기관이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서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3의 비고 제7호에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에 「공공감사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감사담당관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을 보좌하는 기구로 두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음.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두도록 정한 바, 현행 안전재난과를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안전재난과의 업무 중 통합관제운영을 삭제한 바, 구의 안전재난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재난과가 교통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교통국으로 이관된 것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업무 분장에 대해 정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시·군·구의 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에·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의 사무분장으로 행정지원국에 두는 각 과의 주요업무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정한 것으로 제1호는 총무과, 제2호는 주민협치과, 제3호는 교육지원과, 제4호는 문화체육과, 제5호는 민원여권과의 주요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현 담당업무의 범위와 동일한 범위에서 분장됨.

  이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서는 제6조의 주민협치과의 소관 업무 중 제30호 동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제31호 따뜻한 겨울보내기(모금·배분) 등에 관한 사항, 제32호 동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 등 동복지지원팀의 업무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어 현 주민협치과 동복지지원팀이 폐지됨.

【표 2】 행정지원국 개편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총무	동행정지원	교육기획	안전기획	문화예술	민원행정	총무	동행정지원	교육기획	문화예술	민원행정
인사	민관협치	협력교육	재난관리	체육시설	가족관계등록	인사	민관협치	협력교육	문화체육시설	가족관계등록
의회협력	주민자치	평생교육	민방위	생활체육	여권	인재개발	주민자치	평생교육	생활체육	여권
시설관리	동복지지원		통합관제운영	문화회관	기록물관리	대외협력	마을공동체		문화회관	기록물관리
	마을공동체					시설관리				

- 안 제6조에서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기획예산과,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두도록 정한 바, 현행 기획재정국에 있는 일자리경제과를 신설되는 환경경제국으로 이관하고 현행 부과과를 재산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와 지방소득세과 등 2개 과를 신설함.

  일자리경제과를 환경경제국으로 이관한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 수준에서 유사기능을 재분류함으로써 환경경제국을 신설하여 경제국의 명칭에 맞게 일자리경제과를 이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연관성에 따라 기획기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를 둘 경우 1개 국에 속한 과가 8개로 효율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 신설되는 환경경제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공공분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지원, 빅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스마트도시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스마트기획팀, 데이터융합팀, 스마트 관제팀 등 3개의 팀으로 주요업무 분장한 것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과의 신설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안 제12조에서는 스마트도시과의 소관 업무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26가지를 정하고 있음.

또한, 신설되는 지방소득세과는 2020년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세무서에서 함께 처리하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방소득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개정되어 지방소득세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민원폭주와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 인력 10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이 강화될 계획으로 지방세 관리 업무의 비중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부과과 소속 직원 42명과 징수과 34명에 추가되는 10명을 포함 도합 86명으로 운영될 경우 부서장의 적정 관리 규모를 벗어나게 되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여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을 분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표 3】 기획재정국 개편안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기획예산과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기획	일자리정책	언론	재산관리	세입총괄	재산1	기획	스마트기획	언론	재산관리	세입총괄	재산1	지방소득세1
예산	청년정책	홍보미디어	계약	38세금징수1	재산2	예산	데이터융합	홍보미디어	계약	38세금징수1	재산2	지방소득세2
성과관리	지역경제	전산운영	지출	38세금징수2	자동차세	성과관리	스마트관제	전산운영	지출	38세금징수2	주택평가	주민세
법무	사회적경제	정보통신		주택평가	주민세	법무		정보통신		번호판영치	법인관리	자동차세
	동물보호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번호판영치	법인관리							

○ 안 제7조에서는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출산보육과로 정한 바,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청소행정과를 신설되는 환경경제국으로 이관토록 정함.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소관업무 중 현행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을 신설되는 자립지원과로 이관하고 돌봄지원팀과 복지자원팀을 신설한 것은 복지정책과 현원이 46명으로 복지지원과 돌봄 사업을 복지정책과에 신설할 경우 52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수요가

증가되는 돌봄지원과 복지서비스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또한, 어르신장애인과의 장애인 업무를 분리하여 어르신복지과로 개편한 것은 우리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이 14%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업무를 비롯한 현행 복지정책과의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현행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함.

【표 4】주민복지국 개편안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출산보육과
복지기획	어르신복지	여성친화 도시	출산장려	청소처리	복지기획	어르신 지원	장애인복지	여성 친화도시	공공보육
희망복지	장애인지원	아동청소년 친화	공공보육	자원재생	돌봄지원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청소년 친화	민간보육
생활보장	어르신시설	드림스타트	민간보육	음식물처리	복지자원	인생 이모작	생활보장	아동보호	저출산대응
통합조사팀				시설장비	희망복지		통합조사	드림 스타트	
통합관리팀							통합관리		

○ 안 제8조에서는 환경경제국을 신설하여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를 두도록 정한 바, 기후변화, 에너지 미세먼지 등 증가되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결하고 정돈된 도시 정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환경 관리 등의 유사업무 부서들로 국을 신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관되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됨.

부서별 소관 업무를 살펴보면, 녹색환경과에 에너지관리팀을 녹색에너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시장지원팀을 신설, 동물보호팀을 보건위생

과로 이관하여 그동안 구의회에서 업무이관의 필요성을 요구한 동물보호 소관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이관된 것은 타당하다고 봄.

【표 5】환경경제국 개편안

환경경제국(신설)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일자리정책	건설관리	공원	청소처리
환경관리	청년정책	광고물관리	공원문화	자원재생
기후변화대응	지역경제	가로환경개선	조경	음식물자원화
녹색에너지	시장지원		자연생태농업	시설장비
	사회적경제		안양천생태공원	

○ 안 제9조에서는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두도록 정한 바, 현행 녹색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신설되는 환경경제국으로 이관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함.

신설되는 도시재생과는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던 도시재정비 방식에서 도시재생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우리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과를 신설하고 현행 혁신도시기획실에 분장된 도시재생1, 2팀이 혁신도시기획실 폐지로 인해 신설되는 도시재생과로 이관됨.

【표 6】도시관리국 개편안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국				
녹색환경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환경행정	주거복지	도시계획	도시활성화	건축정책	공원	공간정보	주거복지	도시계획	도시활성화	건축정책	공간정보
환경관리	공동주택분쟁조정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1	건축관리	공원문화	부동산행정	공동주택분쟁조정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1	건축관리	부동산행정
기후변화대응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2	공공시설	조경	부동산관리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2	공공시설	부동산관리
지속가능	건축물정비			건축디자인	자연생태농업	지적관리	건축물정비			건축디자인	지적관리
에너지관리				건축안전	안양천생태공원	지가조사				건축안전	지가조사

○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고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로 안전재난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바, 당초 행정안전국 소관 안전재난과가 안전교통국으로 이관되고 현행 통합관제운영 업무를 신설된 스마트도시과(스마트관제)로 이관시켜 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였으며, 교통지도과의 명칭을 주차관리과로 변경한 것은 현행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가 주차장 확충, 주·정차 위반 지도·감독,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 주차 관련 포괄적인 업무를 주요업무로 분장하고 있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두도록 정한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대해 『양천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을 신설하고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맞춰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맞춰 자치단체의 재량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기구 현황

【첨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기구 현황

(2020.2월 말 기준/단위 : 명,개)

자치구	인구수	국(局)		과(課)		보건지소	동(洞)	팀
		정규	한시	본청	보건소			
평 균	389,478	6		34	4		17	212
양 천 구	457,332	5		30	4		18	196
중 구	126,259	5		30	4		15	192
강 북 구	313,289	5		32	4		13	193
동대문구	346,072	5		36	4		14	212
중 랑 구	396,314	5		34	4	1	16	202
서대문구	311,327	5	1	33	3	1	14	211
도 봉 구	332,083	5	1	32	4	1	14	198
구 로 구	406,245	5	1	37	4		16	211
종 로 구	151,309	6		32	3		17	193
용 산 구	229,677	6		33	4		16	200
금 천 구	232,827	6		32	3		10	181
성 동 구	299,797	6		35	4		17	200
광 진 구	351,032	6		34	4	1	15	204
마 포 구	374,315	6		36	4		16	211
동 작 구	395,201	6		35	4		15	216
성 북 구	442,483	6		32	4	1	20	218
은 평 구	479,005	6		34	3	1	16	216
노 원 구	531,840	6		34	4	3	19	221
강 남 구	546,436	6		37	5		22	241
강 서 구	590,419	6		37	4		20	241
송 파 구	675,782	6		37	3	1	27	258
영등포구	370,108	6	1	33	4		18	217
서 초 구	431,336	6	1	34	4	2	18	228
강 동 구	446,887	6	1	39	4		18	217
관 악 구	499,587	6	1	36	4	1	21	22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 첨부 수정안 참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2449호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12일
발의자 : 행정재경위원회

1. 제안이유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을 위해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된 과의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경제국의 명칭을 환경녹지국으로 함(안 제3조).

○ 행정지원국에 기획재정국의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하여 이관함(안 제5조).

○ 환경경제국에 있는 일자리경제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함(안 제6조).

○ 기획재정국에 스마트정보과를 둠(안 제6조).

○ 환경녹지국에 두는 녹색환경과에 공항소음대책 업무를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환경경제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협치과”를 “주민협치과, 홍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정 홍보, 언론보도 지원, 보도자료 관리·제공, 구정신문 발행, 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정책사업 추진 및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지원, 빅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조명을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녹지국에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제5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한다.

1. 공항소음대책 사항,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소음·진동대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수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치수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치수과 치수담당 주사”를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담당 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9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도시국장, 건설교통

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 양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1항제2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⑯「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1항제2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⑰「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각각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⑱「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각각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⑲「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⑳「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한다.

㉑「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4조제5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㉒「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제3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자립지원과장”으로 하고, 제38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하며, 제44조제1항제2호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㉓「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㉔「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㉕「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㉖「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㉗「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㉘「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제11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㉙「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각각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㉛「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각각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㉜「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각각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제

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㉞「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㉟「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㊱「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㊲「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㊳「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㊴「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㊵「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㊶「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9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㊷「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㊸「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㊹「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㊺「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㊻「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중 “행

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㊼「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㊽「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8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㊾「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㊿「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51)「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환경도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52)「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53)「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환경도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54)「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 중 “환경도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55)「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3항 중 “환경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56)「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57)「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